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경제형벌규정 개선 차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불공정무역조사법을 개정하였음('25.1.21). 동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잠정조치명령 미이행자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제32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를 위해 [별표4]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무역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무역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	법 제42조제1항	500	1000	2000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1호	50	100	200
3. 당사자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2호	50	100	200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3호	100	200	400

비고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차수로 본다. 다만,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부과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과태료의 부과) <u>법 제42조</u> <u>제1항</u>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 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 <u>법 제42조</u> <u>제1항 및 제2항</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5854